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53

발의연월일: 2021. 2. 26.

발 의 자:임오경·홍정민·박상혁

오영환 • 이상헌 • 장경태

이수진 • 이규민 • 박성준

이병훈 · 정청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소속팀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한국배구연맹은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징계를 내렸음. 지난 2018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학창 시절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선수에게 3년간 자격정지를, 구단은 5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후 선수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구단은 결국 지명을 철회하는 사건 등이 발생함.

이처럼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선수가 구 단에 입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운동부와 프로구단 및 직장 운동경기부 간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 와 관련된 조치 사항을 교육감에 요청하도록 하고 선수 등은 채용 계

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13).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3제2항 전단 중 "체육단체 등"을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특별한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육지도자와"를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로, "체육지도자에게"를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u>체육단</u> <u>체 등</u>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 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 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④ 체육회등의 장은 <u>체육지도</u>
<u>자와</u>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
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u>체육지</u>
<u>도자에게</u> 제1항에 따른 징계정
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생략)

개 정 안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

· <u>ㅋ 로 단</u> 사유-----

③ (현행과 같음)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